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매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, 법정 검사기한 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·도지사가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,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공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의 주사무소 소재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2.0. ~ 0.0)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-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1항 중 “검사의 신청기간(이하 이 조에서 ” 정기검사등신청기간 “이라 한다)를 ” 검사(이하 이 조에서 “정기검사등” 이라 한다)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정기검사등신청기간” 을 각각 “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” 으로 한다.

제31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판매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⑥ 시·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의 신청을 받은 건설기계가 섬지역(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), 산간벽지 등에 소재하는 경우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한까지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유예 허가통보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유예기한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4조제4호 중 “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(이하 ” 외국시험기관 “이라 한다)” 를 “정부 및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·연구기관(이하 ” 공인시험·연구기관 “이라 한다)로 한다.

제44조의2제4호 중 ” 한국교통안전공단·외국시험기관 “을 ” 한국교통안전공단, 공인 시험·연구기관 “으로 한다.

제56조의2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” 을 “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” 으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8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또는 작업능력 증가를 위한 평형추 등의 개조 또는 추가부착이 없을 것

별표 8 제3호차목의 (4) 중 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” 을 “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” 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(5)를 삭제하며, 제6호다목 중 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” 을 “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” 으로 한다.

별표 22 제2호 표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) 인명피해 ① 고의로 인명피해(사망·중상·경상 등을 말한다)를 입힌 경우 ② 과실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<2018. 6. 28.>	법 제28조제4호	취소 취소
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

④ 삭제 <2018. 6. 28.> ⑤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(1) 사망 1명마다 (2) 중상 1명마다 (3) 경상 1명마다 2) 재산피해: 피해금액 50만원마다 3)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		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면허효력정지 1일 (90일을 넘지 못함) 면허효력정지 180일
---	--	---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매대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적용례) 제31조의2 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시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등록번호새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새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등록번호새김방법 (제14조관련)

1. 새김방법

- 가.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(이하 이 호에서 "차대 일련번호"라 한다)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등록 시 별표 2에 따라 부여받은 등록번호(예 : 012가4568)를 새긴다.
- 나. 차대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본다.
- 다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새김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(중전의 규정에 따라 새긴 등록번호는 중전의 등록번호를 말한다)를 다시 새기고, 차대일련번호를 새긴 경우에는 그 차대일련번호를 다시 새긴다.

2. 활자의 크기 : 3호활자

3. 정정각인부호 : "X"로 한다.

건설기계등록 · 검사증

발급번호:

최초등록일:

제작년도:

등록사항	건 설 기 계 의 표 시			
	건설기계명		등록번호	
	형 식		규 격	
	원동기형식		차대일련번호	
	사용본거지			
	소 유 자 의 표 시			
	성 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 소			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시 · 도지사 직인				
※ 1.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,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. 2.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(법인)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				

1. 주 요 제 원			
형식승인번호 :			
길 이	mm	너 비	mm
높 이	mm	총 중 량	kg
주행방식		정격출력	PS/RPM
기 통 수	기통	연료종류	
2. 저 당 권 등 록 사 실			
구분(설정 또는 말소)	일자		
*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
3. 작 업 장 치	
※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	
최고속도(90km/h) 제한장치	설치 ()
대형건설기계 표지	설치 ()
※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.	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㎡)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○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
○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다만,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
○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.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시 · 도 지 사

4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	5. 등 록 사 항 변 경 란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	연 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 인
신규등록일 :								
* 주의사항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 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

건설기계(타워크레인)등록·검사증

발급번호:

최초등록일:

제작년도:

등 록 사 항	건 설 기 계 의 표 시			
	건설기계명		등 록 번 호	
	형 식		규 격	
	원동기형식		차대일련번호	
	사용본거지			
	소 유 자 의 표 시			
	성 명(법인명)		주인(법인)등록번호	
	주 소			
	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시 · 도지사 직인			
※ 1.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,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. 2.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인(법인)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				

1. 주 요 제 원		
형식승인번호:		
최대정격하중	ton	
설치형식		
전동기	형식	
	출력	kW
	전압	V
	전류	A
2. 저 당 권 등 록 사 실		
구분(설정 또는 말소)	일자	
* 그 밖의 저장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

3. 작 업 장 치		
선회속도	rev/min	
붐(지브)형식		
훅 상승속도	m/min	
지브(붐) 최대각도		
지브길이	메인	m
	카운트	m
마스트	규격	가로 m× 세로 m× 높이 m
	기본	단수 m
최대설치높이		m
카운트 웨이트중량		ton × 개
최소작업반경		m
최대작업반경		m
기타		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다만,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.

건설기계(타워크레인) 등록·검사증

시 · 도 지 사

4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신규등록일: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*주의사항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				
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

4-2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* 그 밖의 건설기계 검사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4-3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
4-4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
4-5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검사장소				

5. 등 록 사 항 변 경 란			
연 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 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1조의2(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	간의 연장) ① 건설기계의 소유	제31조의2(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	간의 연장) ① -----	
자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천	재지변, 건설기계의 도난, 사고		-----	
발생, 압류, 31일 이상에 걸친	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		-----	
사유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	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		-----	
의 신청기간 또는 같은 조 제5	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		-----	
른 정기검사 명령, 수시검사 명	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		-----	
한 <u>검사의 신청기간(이하 이 조</u>	<u>에서 “정기검사등신청기간”이</u>	-- <u>검사(이하 이 조에서 “정기검</u>	<u>사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기간--</u>	
<u>라 한다)</u> 내에 검사를 신청할	수 없는 경우에는 <u>정기검사등신</u>		----- <u>정기검사등의</u>	
<u>청기간</u> 만료일까지 별지 제20호	<u>의5서식의 검사·명령이행 기</u>	<u>신청기간</u> -----		
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	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		-----	
시·도지사(같은 조 제1항제2호	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		-----	
검사의 경우로서 법 제14조에	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		-----	

에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해
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·명령이
행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·
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
내에 정기검사등신청기간 연장
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
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
게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정기
검사등신청기간 연장 불허통지
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신청기
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
사신청을 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등신
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
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. 이 경우
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는
제1호에 따른 연장기간동안 검
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
다.

1. ~ 2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

-----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-----

-----정기
검사등의 신청기간-----

③ -----정기검사등의
신청기간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법 제25
조제2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

<신 설>

제44조(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)
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
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
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
 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
 건설기계형식승인(변경승인)신
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
 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
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 다만,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
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계의 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
해당 건설기계의 판매신고를 하
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
된 것으로 본다.

⑥ 시·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의
신청을 받은 건설기계가 섬지역
(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
제외한다), 산간벽지 등에 소재
하는 경우 검사대행자의 요청에
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
한까지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.
이 경우 검사유예 허가통보를
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유예기
한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서
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4조(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)

4.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
표의 기재내용이 「건설기계

4. _____

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).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·외국시험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5. ~ 7. (생략)

제56조의2(제작결함의 시정) ①
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
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
나 신고를 한 자(이하 “제작자
등”이라 한다)는 제작·조립 또
는 수입(이하 “제작등”이라 한
다)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(이하
“제작결함”이라 한다)이 있는
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
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
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
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, 선
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
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

-----한국교통안전
공단, 공인 시험·연구기관 또
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
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
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
다.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56조의2(제작결합의 시정) ① -

----- 「신

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

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

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<u>보급 지역으로 등록한</u>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